

교육질관리위원회 규정(4-4-12)

개정일 : 2018. 03. 2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질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칭한다.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육관련 처장 및 부처장 중 총장이 선임·임명하며 당연직으로 한다.

② 단과대학 단위로 교육질관리위원회를 두며, 위원은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역량중심 교과 수업계획서 개발
2. (삭제 2018.03.21.)
3. 역량중심 교과 수업참관 의견서문항 개발(개정 2018.03.21.)
4. 역량중심 교과 수업평가(학생) 문항 개발
5. 기타 교육 질 관련 워크숍 주관 및 운영

제4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단과대학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위원의 30% 이상은 신규 위원으로 위촉한다.

제5조(소집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간사는 고등교육평가연구팀장으로 하며, 단과대학의 교육질관리위원회 간사는 단과대학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